

##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시행내규

제정 2018. 12. 31 내규 제39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다.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선정한 마을기업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양주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시설
  - 바.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적 경제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이사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그 밖에 시민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제5조(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이사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본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수립하고, 이를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③ 이사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부서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① 이사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이사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해당부서별 관련 예산규모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 구매 등)** ① 이사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8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대상자 선정기준)** 이사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구매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반영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 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실적 등

**제9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예외)** ① 이사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

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이사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②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이사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 등)** ① 이사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외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지원)** ① 이사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관내기업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 사업에 대하여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① 이사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부서와 직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공단 인사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